

보도 일시	2023. 1. 31.(화) 12:00 2023. 2. 1.(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1. 31.(화)
-------	--	-------	-----------------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지원 (044-202-7190)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탁 (044-202-7193)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
-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어린 자녀가 있어 구직활동에 제한이 많았는데, 추가된 구직촉진수당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직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취업이 어려워 기운이 빠져있었는데, 다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려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I 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 참여요건: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1월 한 달동안 6,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았으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장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반응

✓ 만 36세, 남, 자녀 4인 포함 6인 가구

“실직 후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6명 생활비가 빠듯하여 일용근로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월 90만원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 만 30세, 여, 자녀 2인 포함 4인 가구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그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큰 도움이 되면서 스스로도 자존감과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I 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II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새로이 지급한다.

- * ('22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I유형 50만원 1회 지급
- ('2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① I유형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
- ② II유형 50만원 1회 지급

그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자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개편하였으며, 올해 47만명 지원을 목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2년 청년·경력보유여성 위주의 14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 사업군에 재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우선 도전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취약계층이 직접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새일인턴운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22년 14개 사업 참여자 4.8만명 <14개 사업목록은 인포그래픽(붙임 2) 참고>

그리고 마음건강사업,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간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생계·신용·간병 등의 문제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홍보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8만여 가구에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추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LG전자, 스타벅스, SK하이닉스, CJ CGV 등 우수 사례 등을 토대로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단순 직무수행 외에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개별·조별 과제(프로젝트), 현장탐방, 이력서·자소서·면접 피드백, 취업특강 등

LG전자 참여자 후기

“평택디지털파크 및 과학창의융합교실 방문, 슬기로운 직장생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들과 업무를 하면서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가치관이 확립되었고, 관련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참여자 후기

“온라인강의, 현장 심화교육과 매장 투어를 통해 커피에 대한 기초 지식과 숙련된 직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 제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할 때 서비스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라 느껴져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되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만큼, 복지제도 수급자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고용-복지 연계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계신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2.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붙임1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요

□ **(의의)** 장기구직자, 경단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근거법률(「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0.6월) 제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행('21.1.1.)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험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 **(지원내용)**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경단여성 등)에게 ①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②소득지원 함께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능력 파악 →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매달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 지원	공통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소득 지원	II 유형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25만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시 월 28.4만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시 1회 2만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1회
		공통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더더 좋아집니다!

1 취업의욕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①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

* 기본 월 50만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원)

②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원)의 잔여금액 중 50%

** II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1회, 신설)

2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갑니다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 ('22년 14개 사업) 신중년경력형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책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현장,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②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 예: 지자체 복지사업, 국제형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3 일경험프로그램은 더 도움이 되도록 개편합니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이 참여 가능

②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